

- 단독·다세대·연립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2018. 3.

노원소방서  
(예방과)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 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회 적 약 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성 인 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 자 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 거 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 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타 기 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 책 영 문 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바 른 우 리 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결 재 문 서 공 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 추진배경

- (화재피해) 최근 3년간 노원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100%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의무설치) '17. 2. 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야 함
- (설치실태) '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2월, 초등학교) 결과 노원구 설치율은 40%로 전년대비 25.63% ↑ ※ 서울 설치율 37.02%

# II. 주택화재 실태

## 1 주택현황 및 최근 3년 화재 통계

□ 주택 현황 : 200,701세대 <노원구 통계>

계(세대)	단독주택 (13.8%)	연립주택 (6.4%)	아파트(79.8%)			
			소계	의무	임대	임의
200,701	27,776	12,754	160,171	130,447	24,685	5,039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

구 분	전체화재		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률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266	1.33	131.67	1.33	49.5	100
합 계	798	4	395	4	-	-
2017년	279	3	154	3	55.20	100
2016년	278	1	128	1	46.04	100
2015년	241	0	113	0	46.8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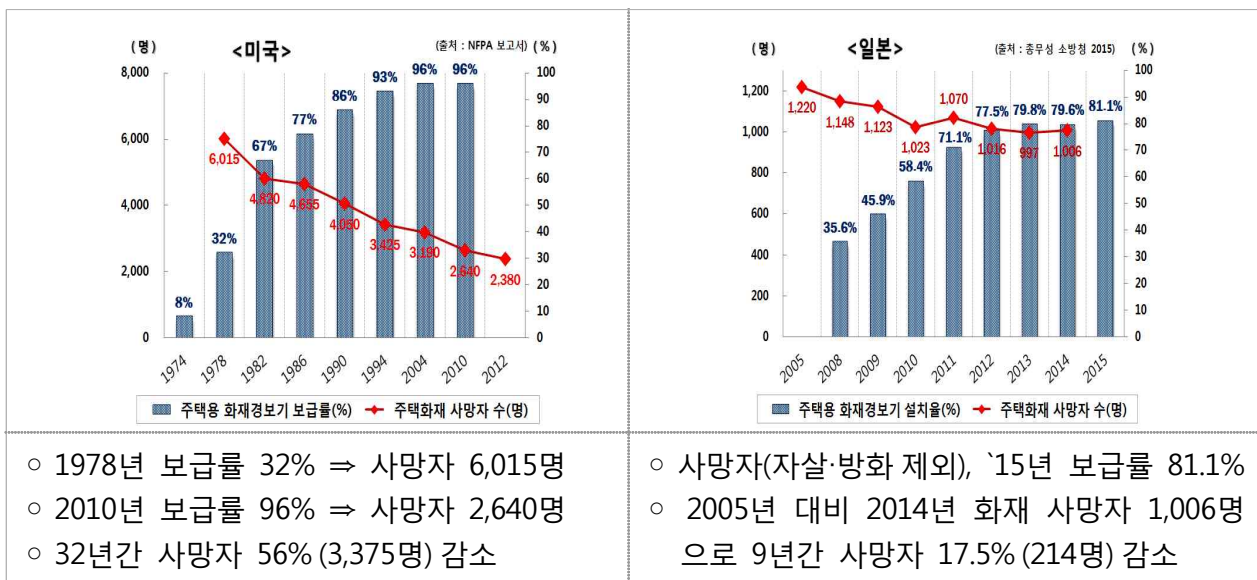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전체화재 798건 중 주택에서 395건 (49.5%)이 발생함
-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4명 중 주택에서 4명(100%)이 발생함

##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8 화재저감 해외 사례

###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7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 ○ (미국·일본) 주택 단독형감지기 설치율 대비 화재사망자 추이



### ○ (영 국) `89년 보급률 35% (사망자 642명) → `11년 88% (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 (348명) 감소 ⇨ 매년 약 16명 감소 추세

### ○ (프랑스) 주택 계약시(임대인 ⇔ 임차인) 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

## Ⅲ. 그간 주요 성과 및 반성

### 1 주요 추진성과

####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율 향상을 통한 화재발생 감축 더욱 필요

○ `16. 12월 설치율 14.37% → `17.12월 설치율 40% (전년대비 25.63%↑)

○ 일반주택 화재분석 결과 작년대비 화재 120%(26건) 증가

- 화재발생 비교 : (`16년) 128건 ⇨ (`17년) 154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완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
- **추진목적** : 자치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독려하여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
- **제정 완료** : 노원구(제정 2018-01-05 조례 제131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무상보급 확산 및 설치율 제고**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완료(2010~2017)
  - ※ 6,277세대 소화기 3,000여개, 감지기 3,200여개
- 주거 밀집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11개소)
  - ※ 소화기 485개, 감지기 219개 보급, 안전교육 300여명
- 소방차 보다 빠른 「보이는 소화기」 보급
  -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19개소, 소화기 224개)



□ **소방관서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편의지원**

- 공동구매 추진 162개(소화기 9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71개)

□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4개 단체) 운영 및 전 방위 홍보**

- 공공기관 홍보영상물 집중표출 및 교육(도봉면허시험장)
- 통장협의회(반상회) “찾아가는 정책 홍보원” 운영(홍보 17회)
- 초·중·고 가정통신문 배포 및 소방안전교육(교육 64회, 2520명)

□ **시민의 생활 속을 파고드는 전 방위 홍보 시행**

-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위한 “이색 아이디어 홍보” 추진



## 2 한계 및 보완

-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에서 구매·설치라는 행동촉구 홍보로 전환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실태조사에 대한 보완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적과약을 위해 자체 설문조사로 설치율을 파악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신뢰성 보완 필요

다양한 대책 및 실효성 높은 홍보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 필요

## IV. 세부 추진과제

###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여건 및 환경조성

#### 1-1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운영 (예방팀)

- 대상/방법 : 노원소방서 / 연 1회(상반기) 회의 개최
- 구 성 : 유관 기관, 지역 단체 등(위원장 : 서장(예방과장))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방침 및 역할분담 협의

#### 1-2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활성화 (예방팀)

- 대 상 : 예방과(지원센터장 : 예방과장)
- 역 할 :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 정보 제공, 대시민 소통창구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전화·인터넷 상담(구매\* 및 설치방법 등)
  - \*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업체(이마트, 롯데마트 등) 명단 확보·안내
  -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등 홍보, 설치지원 요청 시 현장 방문 설치
  - 의용소방대, 마을부녀회 등 지역 단체 공동구매를 통한 설치 촉진
- 방 안 : '원스톱 지원센터' 현황정비 및 현관부착

- ◆ 시·도별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현황  
정비 및 운영 센터별 **현판 부착**
- ◆ 홈페이지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관련  
배너팝업창 게시 및 주택용 소방시설  
전용 홈페이지와 링크
- ◆ '원스톱 지원센터 대표전화 지정운영 및  
운영사항 상시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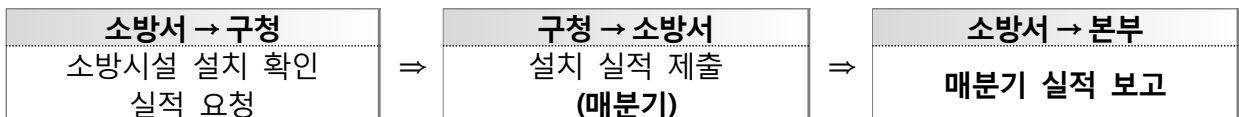


< 원스톱 지원센터 현판(안) >

☞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전용 사이트 개설·운영 (5월)  
- 원스톱으로 국민이 활용 가능한 사이트 운영, 설치상담·응대 과부하 해소

### 1-3 주택 신·개축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예방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
- **대 상** :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방 법** : 주택 인허가부서(구청)과 협의하여 설치실적 관리
- **추진절차**



## 2 유관 기관(단체) 협업 대 시민 설치 촉진

### 2-1 통장협의회(반상회) 「찾아가는 정책 홍보원」 운영 (예방팀, 안전센터)

- **방법/시기** : 119안전센터장(예방팀장) 방문 / 분기 1회 이상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교육, 공동구매 등 추진

### 2-2 가스 점검 시 『가스검침원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위험물안전팀)

- **협업 기관** : 대륜E&S
- **내 용** : 도시가스회사와 협업을 통한 설치 홍보

- **역 할** : 가스검침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 확인 및 미설치 가구 설치 지도



### 2-3 공공기관 홍보영상물 집중표출 및 교육 지원 (홍보교육팀)

- **방법/시기** : 각 구청, 우체국, 도서관 기관별 의뢰 / 분기 1회 이상
- **내 용** △ 구청 소식지 및 각 청사 영상물 활용 민원인 홍보  
△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 출강하여 정책 설명
- \* 구청에서는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정기교육 실시

### 2-4 '요금납부 고지서' 및 'SNS 안내문' 에 홍보문구 게재 (예방팀)

- **협업 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 등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2-5 센터장·팀장 활용 『Man-To-Man 책임관제』 운영(예방팀)

- **대상/시기** : 119안전센터장, 내근 팀장 / 연 중
- **내 용** : 간부 책임 대상 설치 촉진 및 실적관리(순찰 대상)

## 3 무상보급·지원 확대 및 체계적 현황 관리

### 3-1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예방팀)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예 산** : 3,750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
- **방 법** : 노원구 물안전관리과 추천 대상
- ※ (예방과-3299)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따른 개인정보제공 협조 요청'
- **내 용** :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또는 대형소화기, 보이는 소화기 보급




### 3-2 기업·사회단체 등 업무협약으로 무상보급 추진 (예방팀)

- 추진 : 3개 기업·단체 이상
- 대상 : 기업체, 관공서, 사회단체\* 및 개인 등  
\* 라이온스클럽, YMCA, JC클럽, 로타리클럽 등
- 지원 : 취약계층 500가구 이상 무상 보급
- 내용 : 지역 사회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추진

※ (소방청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회신) 기업·단체 무상보급은 기부자의 의사에 맞게 취약계층에게 소방서가 단지 '전달' 하는 정도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 3-3 의용소방대 「화재 없는 안전마을」 家家戶戶 홍보 (예방팀)

- 대상 : 기 조성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11개소)
- 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조사 및 홍보  
△ 홍보물 제작하여 주택 거주 세대별 배포 및 안내
- 방법 : 통장협의회 및 동 주민 센터와 협업하여 추진

추진사례	
<p>◆ 노원구 합동마을, 주택화재 저감 시범지역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 2016. 8월 ~ 10월 / 상계동 합동마을</li> <li>- 대상 : 1개동 (177가구)</li> <li>- 내용 : 의소대원 동원 전체 가구 방문 조사</li> <li>- 결과 :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추진</li> </ul> <p>※ 소화기 100개 보급, 보이는 소화기 25세트 설치</p>	

## 4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 4-1 문화·체육시설 '대형전광판' 집중 표출 (예방팀,홍보교육팀)

- 대상 : 공연장, 영화관, 야구장, 축구장, 서울시 전광판
- 방법/횟수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분기 1회

### 홍보사례

- ◆ 노원구청 : 대형 전광판 표출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표출
- ◆ 하계역 사거리 : 대형 전광판 표출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표출



### 4-2 대형 판매시설 이용객 눈에 띄는 생활 속 홍보(예방팀,홍보교육팀)

- 대상/횟수 : 대형마트, 전자상가, 가전쇼핑몰 등 / 연중
- 방 법 : 1일 판매부스 운영, 홍보방송, 전시용 TV, 카트 등



### 4-3 대중교통 타고 내리며 저절로 알게 되는 틈새 홍보(예방팀,홍보교육팀)

- 대 상 : 버스, 지하철, 기차 / 터미널, 역사, 정류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 체 : 대중 교통내 영상매체, 외부 홍보물 부착 등



### 4-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명함 제작(각 부서)

- 내 용 : 신규임명자 및 부서이동자의 명함 제작 시 명함의 뒷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문구, 그림 등을 삽입하여 제작



< 명함 제작(안) >

#### 4-5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활용한 홍보 (예방팀)

- 대 상 : 자치구 현수막 지정 게시대
- 방 법 : 노원구에 신청
- 기 간 : 각 소방서 예산 여건에 맞게 설정



<예 시>

### 5 이색 홍보시책 적극 발굴 홍보

#### 5-1 이색 홍보물 활용한 워트 넘치는 홍보(예방팀,홍보교육팀)

- 대 상 : 각 소방서별 여건에 맞는 시책 발굴 추진
- 방법/기간 : 예산 활용 또는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연중



#### 5-2 대형 건축공사장 가림펜스 안전벽화(포토존) (예방팀)

- 대 상 : 상주감리 공사 현장
  - ※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공사장
- 방 법 : 건축 허가동의 시 자치구 협의
- 내 용 : 트리아트, 정책 홍보벽화 구현
  - ※ (트리아트) 눈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미술작품



<예 시>

#### 5-3 다중운집장소(계단, 엘리베이터 등) 랩핑 광고 (예방팀)

- 대 상 : 다수 시민이 운집하는 장소
  - ※ 예시) 지하철 계단,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등
- 방 법 : 예산 설치 및 관계인 협의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시안을 랩핑 형식으로 구현



<예 시>

## 6 안전교육·체험 기회를 활용한 상시 홍보

### 6-1 지역 축제,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홍보부스」 운영 (홍보교육팀)

- 내용 /기간 : 노원구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정책홍보 / 연중



### 6-2 초등·중학교 교실로 「찾아가는 119 일일교사」 운영 (홍보교육팀)

- 내용 /대상 : 소방관, 의소대, 안전과수꾼 등이 방문 교육 / 관내 학교 전체
  - 방법 : 교실 개별방문 또는 강당 집합교육 / 학교별 협의
  - 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시 초기대응요령·CPR 등
- ※ 교육 실시 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결과 사후 확인(담임선생님 협조)

### 6-3 모든 소방안전교육 및 대외활동 시 설치의무 안내 (홍보교육팀)

- 내부 교육 : 소방안전체험관, 진로체험, 소방서 견학 시 안내·홍보
  - 외부 강의 : 민방위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 지원
- ※ 소방청 홍보영상 배포(별도 송부)

## 7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

### 7-1 주택용 소방시설 미담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홍보교육팀)

-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보고 ⇨ 기고문 등 지속적 언론홍보
- 화재조사(현장대응단) 사례 발굴하여 예방과 및 홍보교육팀 통보

### 7-2 케이블 방송, 소방전문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홍보 (홍보교육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정책 및 수혜 사례자 인터뷰 등

## V. 행정사항

- 각 부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 감소사례 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 관할 지역별 여건·특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이색홍보 시책을 발굴 하여 추진하고, 결과보고는 매 분기 말일한 제출.
- 추진실적은 소방서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

붙임 :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2018.01.05.) 1부. 끝.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8-01-05 조례 제1315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구청장의 책무)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